

11·12세기 소뮈르 지역의 일방신명재판에 관한 고찰

『성 플로랑(Saint Florent)
수도원의 검은색 표지의 문서집』을 중심으로*

이 정 민**

목차

머리말

I. 11·12세기 일방신명재판의 기원과 성격

1. 일방신명재판의 기원
2. 일방신명재판의 의식절차

II. 11·12세기 일방신명재판의 전개 양상

1. 일방신명재판의 전개양상
2. 소뮈르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일방신명재판의 양상

맺음말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54-A00019].

** 경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원

머리말

독자적인 사법적 권한을 획득한 봉건 영주들이 주재하는 11·12 세기의 봉건 재판에서도 성문법 체계의 미완성이나 비약한 문자 해독력으로 말미암은 객관적 자료의 기술 혹은 해석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한계점을 극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봉건 재판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던 대중들의 시선은 늘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므로 객관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재판 결과로 재판에 관련된 이들과 재판에 참여한 대중들의 오해와 의심을 제거해야만 한다는 사실은 재판을 주재하는 봉건 영주들에게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또한 끊임없이 발생하는 갈등과 사적 복수라는 폭력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현실적인 불만과 공포를 해소시키고 공동체의 사회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자구책은 반드시 필요했다. 이러한 호전적이고 폭력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빈약한 문자해독력과 불충분한 성문법과 증거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사법적 장치로 제안된 것이 신명재판(神命裁判, l'ordalie)이었다. 전지전능한 신이 결코 결백한 이가 멸망하도록 또는 부당한 이가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그리스도교적 믿음을 전제로 하는 신명재판은 크게 결투를 통해 죄의 유무를 밝히는 ‘쌍방신명재판(l'ordalie bilatérale)’과 죄의 유무를 가리기 위한 레프뢰브(l'épreuve, lex)를 통해 판단하는 ‘일방신명재판(l'ordalie unilatérale)’으로 나뉜다. 호전적이고 폭력적인 쌍방신명재판¹⁾보다는 공개적으로 시행되는 시험을 통

1) 855년 발랑스(Valence)공의회와 9세기경 대주교 아고바르(Agobard)도 쌍방신명재판에 관한 법률들의 폐지를 요구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쌍방신명재판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쌍방신명재판을 통하여 소송을 해결하고 있는 일화들은

한 종교적 감동의 연출이 자주 등장하는 일방신명재판이 여성이나 성직자들을 포함한 전투력을 가지지 못한 대중들에게까지 널리 수용될 수 있다는 폭넓은 대중성을 확보하였으며 빈약한 문자해독력과 불충분한 성문법 체계를 보완하는 사법적 관습 장치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이르렀다. 11·12세기 봉건재판의 한 형태로서 제안되었던 신명재판에 관한 일반론적 분석과 고찰은 시도되었으나 상대적으로 호전적이고 폭력적인 쌍방신명재판에 비해 여성이나 성직자들을 포함한 전투력을 가지지 못한 대중들에게 시험을 통한 종교적 감동을 자주 연출하는 일방신명재판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²⁾

또한 11·12세기 일방신명재판의 전개양상과 이에 관련된 일화를 언급하고 있는 기록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며 신명재판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초기 그리스도교 사회에서부터 이어지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압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문학인류학적·법학적·종교적 학문 접근의 보완과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³⁾ 이는 공동체 질서와 평화를 성문법전에 의거한 객관

『성 플로랑 수도원의 검은색 표지의 문서집(Codex vetustarum donationum niger nuncupatus)』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 fol. 56, fol. 94, fol. 128-v와 129-r, fol. 139-v.

- 2) 필자는 11·12세기 소뮈르와 그 주변 지역의 신명재판(Ordalie)에 관한 연구를 『성 플로랑 수도원의 검은색 표지의 문서집』을 중심으로 시도하였다. 그러나 봉건재판과 신명재판의 성격과 그 기능에 관한 일반론적 분석으로 그쳤으므로 본고에서는 신명재판 중 일방신명재판의 성격과 그 기능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와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정민, 「11·12세기 소뮈르와 그 주변 지역의 신명재판(Ordalie)에 관한 고찰」, 『프랑스사연구』, 제21집(2009,8).
- 3) P. 브라운(Brown)은 신명재판의 전례의식이 공동체의 긴장과 폭력을 완화시키는 역할에 주목하고 있으며 S. 화이트(White)는 특히 11세기 앙주를 포함한 루아르강 주변에서 진행된 신명재판이 지니는 정치적·전략적 성격에 관한 탁월한 연구를 보여준다. 또한 R. 바틀렛(Bartlett)은 ‘불과 물을 매개로 하는 시험’이라는 연구를 통하여 일방신명재판 연구에 활력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K. 조이머(Zeumer), J. F. 르마르니에(Lemarignier), J. 고드메(Gaudemet)에 이어 D. 바르텔레미(Barthélemy) 역시 신명재판의 기원과 성격 그리고 그 사법적·종교적·

적·세속적·정형화된 공권력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근대 국가 조직 체제의 출현 이전 경험적·종교적·관습적 질서와 세계관을 토대로 하는 11·12세기 봉건 사법적 관습과 당시대인들의 사법적 사고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소뮈르에 위치한 성 플로랑 수도원은 11·12세기 급속히 팽창하는 봉건 세속 영주들과 때로는 그 주변의 수도원들과 충돌하는 다양한 갈등과 소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방신명재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성 플로랑 수도원의 검은색 표지의 문서집』에서 소개되는 일방신명재판에 관한 소중한 정보와 몇몇 일화들은 본 연구에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11·12세기 일방신명재판이 지니는 봉건적·사법적 기능과 전개양상, 특히 소뮈르의 성 플로랑 수도원과 루아르강 주변에 위치한 여러 수도원들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일방신명재판을 중심으로 고찰해나가고자 한다. 공동체의 질서를 포함한 전반적인 생활양식이 성문법 체계가 아닌 그리스도교적 세계관 혹은 언어·지역·관습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중세 봉건 사회의 특수한 조건과 그 역사적 맥락을 전제로 하는 일방신명재판에 관한 연구는 다소 침체되었던 봉건 관습과 봉건 사법적 영역 연구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I. 11·12세기 일방신명재판의 기원과 성격

1. 일방신명재판의 기원

급속한 봉건 세속 영주권의 팽창과 호전적인 기사들의 공격에 대

사회적 기능에 관한 폭 넓은 연구를 제공하고 있다.

항하여 현실적인 자구책을 간구하던 교회는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미궁에 빠진 범죄들을 처리함에 있어 일방신명재판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11세기를 중심으로 ‘신의 평화운동(la paix de Dieu)’을 비롯한 ‘평화’의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는 교회의 노력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소뮈르를 포함한 루아르강 주변 지역에서는 기록물의 부재와 증거의 혼란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범죄나 소유권 분쟁 등을 처리하기 위한 사법적 관습장치로써 일방신명재판을 적극 수용하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성주들이나 기사들 사이 혹은 영주와 기사들 사이 그리고 수도원들 사이의 발생하는 첨예한 사법적 갈등은 신명재판을 통해서 해결되곤 했다. 신명재판 의식 절차의 초반부에 해당하는 시험에 사용될 뜨겁거나 차가운 물 혹은 달구어진 쇠를 축복하거나 시험이 끝난 후 시험에 임한 사람에 대한 축성과 마귀를 내쫓는 행위 등은 적어도 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⁴⁾ 상세하고 생동감 넘치는 1060-1100년경의 소뮈르와 루아르강 주변의 기록물들은 선서와 함께 죄의 유무와 진실을 판명하기 위한 신명재판을 마치 하나의 관례(ex more)로 소개하고 있으나 이는 9세기 개혁의 지속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카롤루스 마그누스(Carolus Magnus)의 후손들은 더 이상 통치력을 발휘할 수 없었으나 그 법률정신은 지

4) Robert Bartlett, *Trial by Fire and Water. The Medieval Judicial Ordeal*(Oxford:Clarendon Press,1986). Karl Zeumer, *MGH, Sectio V, Formulae, I, Merovingici et Karolini Aevi*, Hanovre, 1882, p. 559-730. D. 바르텔레미는 일련의 전례의식행위가 카롤루스 마그누스와 교황 레오보다는 루이 경건왕(Louis le Pieux)과 외젠(Eugene)1세에 의해서 마련된 것으로 수용하는 견해를 보인다. 그레구아르 드 투르(Grégoire de Tours)는 간통 혐의로 남편들에 의해서 고소당한 두 명의 여자는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고자 목에 커다란 돌을 매달고 론(Rhône)강에 빠뜨려지는 ‘차가운 물을 이용한 일방신명재판’에 관한 일화와 함께 시험을 통한 무죄 입증 후에 진행된 의식 절차에 관하여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Cartulaire noir de la cathédrale d'Anger*, ed., Chanoine Urseau(Angers: Germain et Grassin, 1908), n° 25.

속되었다.⁵⁾ 카롤루스 왕조 시대의 재판 법정에서는 이미 쌍방신명재판과 함께 일방신명재판에 관한 기록들이 종종 등장하고 있으며 마치 사법 재판은 협상에 의한 평화를 재정립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때로는 소송은 위험하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는 대립으로 이어졌고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은 종종 격렬하였으며 때로는 갈등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기도 하였다. 신명재판을 언급하고 있는 문서들은 주로 9세기에서 14세기 초까지 걸쳐 있으며 대개 서프랑키아(Francia)에 집중되어 있다.⁶⁾ 힝크마르 드 랭스 (Hincmar de Reims)와 같은 신명재판에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고위 성직자들의 영향 하에 있는 지역에서 신명재판에 관한 기록물들이 종종 발견되며 부르군드족(Burgunds)이나 롬바르드족(Lombards)은 이미 800년 이전부터 쌍방신명재판을 ‘신의 재판(iudicium Dei)’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1000년경 프로방스(Provence)의 백작의 사법권의 위기와 더불어 기록문서의 후퇴는 봉건 재판 법정에서의 단순한 구두 증언의 비중을 증가시켰다. 이에 따른 결과로써 선서, 쌍방신명재판과 죄의 유무를 밝힐 수 있는 시험에 해당하는 일방신명재판을 선호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⁷⁾

실제로 대다수의 기사들이 미궁에 빠진 사건이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전투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쌍방신명재판을 선호하는 것과는 달리 교회는 쌍방신명재판을 그다지 탐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 예로, 『성 플로랑 수도원의 검은색 표지의 문서집』에 담긴 1080년경 알론(Allonnes) 근처에 있는

5) D. Barthélemy, “Les ordalies de l’an mil”, *La justice en l’an mil, Collection Histoire de la Justice*, 15, Paris, 2003, p. 81.

6) 중부 독일, 로렌(Lorraine)과 북프랑스에 해당된다.

7) 이정민, 같은 논문, p.11.

숲에 대한 소유권을 둘러싸고 야기된 성 플로랑 수도원과 소뮈르에 속한 몽소로(Montsoreau)의 고티에(Gautier)의 아들 기사 기욤(Guillaume)과의 분쟁에서도 무기 사용을 선택한 기욤과는 달리 성 플로랑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타협을 통한 화해를 제안한다.⁸⁾ 물론 교회는 자신의 전투력을 갈등해결의 주요한 수단으로 여기는 결투재판에 임하는 전투원들에게도 영성체를 허락하고 모든 전투에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사고를 마치 신의 의지에 의한 복수와 같은 신의 섭리 혹은 신의 의지에 의한 사건으로 적절히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아테마르 드 샤반느(Adémar de Chabannes)는 성직자나 수도승이 결투재판을 신의 재판이라고 부르는 것을 금하고 있다.⁹⁾ 그러나 교회는 재판 배경에 상관없이 별정계 달구어진 쇠에 맨 손을 올리게 하거나 펄펄 끓고 있는 냄비에 손을 담그는 등의 형태로 전개되는 일방신명재판을 신의 재판이라고 부르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사제는 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일방신명재판에 사용되는 모든 도구들을 축성하면서 악마의 음모로부터 분리시키고자 구마를 실시한다. 이때 사제는 모든 부정수단, 모든 요술 혹은 미약(媚藥)의 사용은 그 시행자에게로 되돌아갈 것을 명령한다. 특히, 전례의식의 집전자는 구약성서의 시편을 낭송한다. 어려움에 봉착한 재판은 하느님을 외치며 하느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드러낸다. 당시대의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복음서보다는

8) 『성 플로랑 수도원의 검은색 표지의 문서집』, fol. 94. 또한 성 플로랑 수도원의 수도사들과 성소비르드라플라스(Saint-Sauveur-de-la-Place)의 영주 아모리(Amaury)와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쌍방신명재판과 11세기 폴레(Pollet)에 위치한 몰레방아 소유권을 두고 발생한 소송에서도 성 플로랑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쌍방신명재판을 자제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ibid.*, fol. 56 과 fol.139-v.

9) *Ademari Cabanensis Chronicon*, ed., Pascale Bourgain, Richard Landes, Georges Pon(Turnhout: Brepols, 1999), (Corpus Christianorum. Continuatio Mediaevalis CXXIX), III, 66, p. 185.

시편을 인용하고 묵상하는 것을 즐겨하였다. 예를 들면,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에서 나오는 쓴맛이 나는 물의 신명재판을 언급하는 것에 그친다.¹⁰⁾ 일방신명재판의 집전자는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Daniel)을 구한 일, 큰 불가마에서 어린이 3명을 구해낸 일, 부활한 라자로(Lazare), 감옥에서 베드로를 구해낸 일 등과 같은 전지전능한 신에 의한 기적적인 구원을 호소한다. 만약 소송을 제기한 이가 귀족이나 교회인 경우, 신명재판에 임하는 소송인은 매우 고통스러운 고민에 빠지게 된다. 왜냐하면 소송의 결과가 실패하게 된다면, 의심할 여지없이 소송인의 영혼은 지옥에 빠지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패배한 소송에 대한 엄청난 벌금을 지불하게 되는 극심한 종교적·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소송에서 이긴 경우에는, 그의 영혼은 영웅화되고 정화되며 반대로 끝까지 시험에 임한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게 될 것이다. 어쩌면 협상을 체결하거나 고소를 취하하거나 비용을 결산하는 편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바로 한판 승부를 위해 흥망을 거는 것이 원칙이다. 즉 일방신명재판의 모든 시험의 이데올로기적 토대는 바로 그리스도교적인 것이며 바로 성서적 기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정의로운 신의 판단을 증명하기 위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이겨내야만 하는 순교자들이 그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허락했다는 믿음은 일방신명재판의 기원이 고대 이교도적인 것도 게르만적인 것도 아닌 고대 말기의 그리스도교적 전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2. 일방신명재판의 의식절차

일방신명재판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한 자가 제안하기도

10) Hincmar de Reims au IX siècle: *De divortio Lotharii*, *Patrologie Latine* 125, col. 660.

하고, 때로는 재판법정에서 결정되기도 하였다. 일방신명재판을 언급하고 있는 11·12세기 소뮈르와 루아르강 주변에서 위치한 수도원들의 문서나 기록물 중 일방신명재판이 시행되는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¹¹⁾ 하지만 객관적 기록물이나 증거의 결핍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써 제안되는 일방신명재판의 경우에도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는 증거를 무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일방신명재판을 포함한 모든 소송이나 재판은 재판장을 비롯한 재판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상반되는 양쪽의 엇갈리는 토론¹²⁾으로 구성되었다. 사실 이 토론은 증인들과 기록물에 의거한 쟁점에 가까운 추론과 말대꾸로 구성되어 있다. 만약 재판이 잘 진행되지 않거나 막다른 길목으로 들어서거나 혹은 양쪽 모두가 극도로 지칠 경우에는 이미 시행되어졌던 선례들이 담긴 법령집(*leges*)을 찾게 된다. 그러나 만약 실패하면 무거운 벌금을 물어야하며 선서가 행해지고 일방신명재판이 행해지는 교회나 쌍방신명재판이 벌어지는 장소를 선택하기 위해서 판결을 연기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최상의 갈등 해결 방법은 양쪽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만약 재판에서 패한 사람이 재판 진행과정이나 재판 결과에 의심과 불만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면 그는 깊은 원한과 상처를 가지게 될 것이므로 양쪽의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갈등 해결 방안으로 보인다.¹³⁾ 양쪽의 체면과 입장을 유지하면서 긴장과 갈등을 완화시키고 평화를 재정립할 수는 없는 것일까? 때로는 양쪽의 합의가 아닌 재판 법정의 사법적 판결에 의한 갈등 해결이 내려졌을 때 서로의 화해와 우정을 복원

11) Stephen White, 같은 논문, pp. 89-123.

12) 이 토론을 라틴어로 'ratio'라고 부른다.

13) Stephen White, "Pactum legem vincit et amor iudicium. The settlement of disputes, Compromise in 11th century France", *The American Journal of Legal History*, 22(1978), p. 281-308.

시키고자 이기는 사람이 지는 사람에게 양도를 하도록 충고하는 일도 빈번하다.

일방신명재판을 감수하는 묶은 토론의 추이에 따라 소송인이나 피소인에게 돌아가게 된다. S. 화이트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방신명재판을 제안하는 것은 궁지에 몰린 소송인에게는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다.¹⁴⁾ 특히 자신의 결백이나 권리를 스스로 입증할 수 없는 자에게는 일방신명재판은 자기변호와 자기방어를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 있다. 일방신명재판을 통해 재판관들은 양쪽 중 어느 한쪽이라도 체면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과 긴장감을 환기시키면서 느릿느릿한 추론을 끝맺도록 압력을 가하게 된다. 마치 인간들의 재판처럼 보이는 일방신명재판이 지니는 신의 재판이라는 이중적 성격은 긴장완화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처럼 P. 브라운(Brown)은 일방신명재판을 신앙에 기초한 종교 의식처럼 보이는 긴장완화를 도모하는 정신치료연극과 같은 기능으로 설명하고 있다.¹⁵⁾ 이와는 달리 S. 화이트는 여성들의 간통, 남자들의 배신과 살인과 같은 중범죄를 다룬 소송에서 쌍방신명재판이 더욱 선호되는 것과는 달리 재산 소유권에 관련된 소송의 경우 일방신명재판이 자주 시행되며 오히려 긴장과 갈등의 증폭, 강제적인 시험 등이 자주 등장한다고 지적한다.¹⁶⁾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은 성서에서 비난하는 ‘신을 시험하는 행위’로 전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믿음을 전제로 일방신명재판이 제안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14) “신은 어실프게 자신의 예속 조건을 거부하는 모든 교회 농노들을 벌할 것이다.”, Jane Martindale, *Status, Authority and Regional Power. Aquitaine and France 9th to 12th centuries*(Aldershot(GB):Variorum, 1997), p. 548.

15) P. Brown, *La société et le sacré dans l'Antiquité tardive*(Paris:Le Seuil, 1985), pp. 245-272.

16) S. White, 같은 논문, pp. 89-123.

일반적으로 제기된 소송을 둘러싼 토론과 타협이 중단되자마자 압력과 일종의 내기가 등장하게 되고 결정적인 시험은 몇 주 이후 정도의 일정한 기간 동안 연기되며 그동안 공식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 일방신명재판의 시행, 시험의 종류와 사용, 협정서 그리고 일방신명재판의 결과와 그 의미 해석은 찬반을 통한 토론에서 결정된다. 프랑크부족법에서 즐겨 사용되던 증거물로는 증언, 기록과 자백 그리고 정화(淨化)의 선서¹⁷⁾를 들 수 있는데 11세기경 선서와 일방신명재판의 결합이 하나의 관습으로서 틀을 갖추게 되었다.¹⁸⁾ 일방신명재판의 소송 절차는 소송 제기자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혐의를 받은 남자 혹은 여자는 혐의의 자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고소를 부인하기 위한 증인을 청하였다. 일방신명재판은 신앙고백절차라기보다는 자신의 적들을 압도하기 위한 신에게 의탁하는 실천행위라고 할 수 있다.¹⁹⁾ 일방신명재판 이전의 자백은 재판의 미사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불이 아닌 차가운 물을 이용한 시험에 해당된다. 뜨거운 물이나 달구어진 쇠를 매개로 하는 시험의 경우 자백의 요구는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나 차가운 물이나 빵과 치즈를 매개로 진행되는 시험의 경우 피고인의 자백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자백은 정말 죄인을 향한 관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이것은 죄의 종류와 절차에 달려 있는 것 같다.

17) 12·13세기의 법학자들에게 선서는 *purgatio canonica*, 신명재판은 *purgatio vulgaris*로 표현된다.

18) J. 고드메(Gaudemet)는 카롤루스 시대와 그 이후의 전례의식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선서의 요구증가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J. Gaudemet, *Les ordalies au Moyen Age: doctrine, législation et pratique canonique, Recueils de la Société Jean Bodin, XVII. La preuve*, 2(Bruxelles, 1965), p. 130.

19) Dominique Barthélemy; "Présence de l'aveu dans le déroulement des ordalies(IXe-XIIIe siècle)", *Collection de l'Ecole Française de Rome*, 88, Rome, 1986, p.209.

일방신명재판이 시행되는 장소와 참가 인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은 부족하지만 주로 주교가 참석한 대성당에서 개최되었으며 대성당의 고위 참사위원들을 포함한 백과 그의 가신들 그리고 재판에 연루된 자들과 많은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미사와 성체를 영하고 사제의 축성과 기도와 함께 시험이 시작된다. 일방신명재판의 미사는 신에게 힘을 달라고 요청하는 사제의 기도로 시작되며 물을 이용한 일방신명재판과 고백은 자백과 속죄의 간청의 목적이며 강제적인 제재는 오직 과문 밖에 없는 그리스도교적 범죄에 관한 주교회의의 재판에서는 매우 중요하다.²⁰⁾ 일방신명재판의 의식절차는 먼저 시험에 임하는 피고인은 미사곡을 노래하고 있는 사제가 있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된다. 성체분배를 위해서 사제는 만약 피고인들이 죄가 있다면 감히 제대 앞으로 나오지 말 것을 선서하게 한다. 만약 그들이 침묵을 지킨다면 사제는 ‘오늘 시험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당신들과 함께 합니다.’²¹⁾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성체를 영하도록 한다. 사실 마르코 복음서 11장 22절과 같이, 사제는 신을 향한 결백한 자의 믿음과 사랑을 확인한다. 일방신명재판은 무죄나 상황완화를 입증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피소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거나 실패하게 되면 죄의 부인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며 이러한 경우 죄와 혐의의 자백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만약 일방신명재판 후 시험에 임한 자의 손에 부정함을 드러내는 화상의 상처가 남아 있다면 반드시 이전의 잘못을 뉘우치는 고백(confessio)을 마땅히 표현해야만 한다.²²⁾ 1090년과

20) J. F. Lemarignier, *Histoire des institutions française au Moyen Age*, III, (Paris, 1967), pp.14-18.

21) Domni nostri Jesu Christi sit vobis ad probationem hodie.

22) ‘고백하다(confiteri)’라는 단어는 ‘찬미의 고백(confessio laudis)’과 ‘속죄의 고백(confessio peccati)’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1110년 사이에 루아르강에 위치한 성 롱스레(Ronçeray) 수녀원을 상대로 아르눌프 아메르 파린느(Arnulf Amère-Farine)의 후손들이 아르눌프의 유언으로 남긴 포도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시행된 뜨거운 물을 이용한 일방신명재판의 결과 고소인들의 유죄가 드러났으며 결국 고소인들이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다.²³⁾ 물론 차가운 물을 이용한 일방신명재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사법적인 성격과 동시에 속죄의 성격을 함축하고 있는 자백은 카롤링거 시대에서도 요구되었는데 일방신명재판의 결과에 따른 고백은 완벽한 속죄의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남프랑스에서 ‘신의 휴전(La trêve de Dieu)’에 관련된 차가운 물을 이용한 시험이 속죄 혹은 보속의 형태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일방신명재판이 시험을 감내하는 고통에 의한 사면이 이루어지게 하는 상당한 효과를 발한다고 할 수 있다.²⁴⁾ 886년 교황 스테파누스(Stephanus) 5세는 루드베르(Ludbert de Mayence)에게 보낸 유명한 편지에서 영아살해를 폭로하기 위한 불을 이용한 일방신명재판의 시행을 비난하며 오직 증언이나 자발적인 고백만으로 범죄들을 재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²⁵⁾ 하지만 여기에서 교황 스테파누스 5세가 비난하는 일방신

23) Cartulaire de l'abbaye du Ronçeray d'Anjou, Recueil de documents et mémoires inédits sur cette province publié sous les auspices du Conseil général de Maine-et-Loire par Paul Marchegay(Angers: Imprimerie de Cosnier et Lachèse, 1854), Tome III, n° 313.

24) Dominique Barthelemy, *L'an mil et la paix de Dieu*(Paris;Fayard, 1999), p. 509.

25) nam ferri candentis vel aquae ferventis examinatione confessionem extorqueri a quolibet sacri non censent canones, P. Browe, *De ordaliis, tome 1, Rome, 1932, n°14*(Pontificalis Universitas Gregoriana. Textus et documenta. Series theologica. 4).

명재판은 제안이 아니라 강제로 집행된 경우이며 차가운 물을 이용한 시험이 아닌 뜨거운 물이나 달구어진 쇠를 이용한 시험에 제한되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서, 교황 스테파누스 5세의 지적은 인간이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악마의 간계에 넘어가버리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암암리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속죄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와 같은 일방신명재판의 의식절차와 진행과정은 일방신명재판의 지닌 주요한 성격과 기능을 잘 보여준다. 11·12세기 봉건사회의 전형적인 ‘페드(faide, feud)’라고 불리는 개인과 개인 혹은 집단과 집단 그리고 개인과 집단 사이에 발생하는 반목과 불화는 복수라는 연쇄반응을 수반하게 된다. 불충분한 성문법과 증거의 혼란이라는 객관적 사법 기준이 부족한 시대적 상황과 사적 전투와 폭력으로 만연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갈등과 모순을 해결하고자 제안된 일방신명재판은 11·12세기 봉건사회의 중요한 사법적·종교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II. 11·12세기 일방신명재판의 전개 양상

1. 일방신명재판의 전개양상

11세기 일방신명재판을 다루고 있는 기록물에서는 자신의 결백이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봉건 제후들이나 기사들이 쌍방신명재판을 통한 무력적이고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선택하는 것과는 달리 성직자들은 상대적으로 온화한 해결 방법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일방신명재판의 경우 빵과 치즈 등 음식물, 뜨거운 물이나 달구어진 쇠, 차가운 물 등 시험에 사용되는 도구나 매개체에 따라 크게 나눌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전례의식절차 중에서 고백을 중시하고 있는 시험은 대개의 경우 차가운 물과 빵과 치즈를 매개로 하는 시험이라는 것이다. 즉 차가운 물과 음식을 매개로 하는 시험의 경우 그 결과와 죄의 유무에 대한 해석이 즉각적으로 등장하는 것에 비해 뜨거운 물이나 달구어진 쇠를 이용한 경우 시험에 임하는 이에게는 3일이라는 어느 정도의 결과가 드러나는 시간이 주어진다. 화상의 흔적을 기다리는 3일이라는 시간을 통한 대중적 심리를 완화할 수 있는 전략과 시험에 임한 자의 화상을 치유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일방신명재판 중 빵과 치즈를 이용한 시험을 살펴보면, 먼저 사제가 도둑당한 물건이나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이름을 종이에 적는다. 그리고 그 종이 위에 혐의를 받는 자들이 그들의 손을 올리는 동안에 시험에 사용될 보리빵과 염소 또는 양 치즈를 계량하고 재확인한다.²⁶⁾ 물론 시험이 시행되기 전에 반드시 혐의를 받고 시험에 임하게 될 사람들에게 자백을 요구한다. 빵과 치즈를 이용한 시험은 혐의를 받는 사람이 빵과 치즈를 통채로 삼킬 수 없을 만큼 목까지 가득 찬 상태로 버텨야만 한다. 마치 불을 이용한 시험을 통하여 신체에 남겨진 흔적이 신의 의지를 설명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받는 사람의 목구멍에 붙어 있는 빵과 치즈의 조각들은 신의 개입과 판단의 흔적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즉 빵과 치즈 덩어리가 가득 찬 목은 거칠어지고 부풀어 오르게 될 것이다. 악마의 기운 탓에 몸의 떨림이 있으며 마침내 자백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혐의를 받는 자의 입안에 빵과 치즈 조각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느냐 혹은 몇 몇 조각이 남아 있느냐를 검사해서 죄의 유무를 판단하고 해석하게 된다.²⁷⁾

26) 빵과 치즈의 이름과 무게는 다양하다.

27) A 27(K), *MGH Legum Sectio V:Formulae. I. Merovingici et Karolini aevi*,

이와는 달리 특히 절도혐의나 종교재판의 경우 차가운 물을 매개로 하는 시험이 선호되곤 한다. 기베르 드 노장(Guibert de Nogent)과 에르만 드 투르네(Hermann de Tournai)의 중복된 증언으로 알려진 1110년 랑(Laon)교회의 중요한 보물을 훔친 앙소(Anseau)에 대한 신명재판을 살펴보자.²⁸⁾

두 번째 장물 때문에 꼼짝 못하게 된 앙소는 차가운 물을 매개로 하는 시험에 임하게 되었지만 아무 것도 자백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고문에 처해졌으며 마침내 두 번째 절도만을 시인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할 것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룡을 둘러싼 거대한 물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절도범 앙소의 노력은 실패하였고 마침내 부인하던 첫 번째 절도를 고백하였다.

또한 차가운 물을 매개로 하는 신명재판은 이단자를 다루는 일에도 적용되곤 하는데 한 예로 1114년 수와송(Soisson)²⁹⁾과 1143년 콜론느(Cologne)³⁰⁾에서 진행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이들을 고백과 함께 다시 개종시키는 일방신명재판을 들 수 있다. 빵과 치즈가 목에 걸려 숨이 막혀서 헉헉거린다는지 무거운 돌을 목에 매고 차가운 물속으로 들어가는 생명에 커다란 위협을 가하는 등 일방신명재판이 지니는 위험성 때문에 혐의를 받은 자가 시험에 임하기 전에 고백을 선택할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와 더불어 11세기 노르망디(Normandie)의 오르테릭 비탈(Orderic Vital)이 기술한 ‘시뻘경계 달군 쇠’를 이용한 일방신명재판

ed., K. Zeumer(Hanovre, 1882).

28) Guibert de Nogent, *Autobiographie*, ed., E. R. Labande(Paris, 1981), pp. 411-418. Hermann de Tournai, *De miraculisbeatae laudunensis*, PL 156, col. 1011-1014.

29) *Ibid.*, p.434.

30) Bernard de Clairvaux, *Sermo 66, Cantica Canticularum*, PL 183, col. 1100.

에서도 긴장감이 팽배한 봉건적 갈등과 반목이 극적으로 해결되는 과정을 찾아 볼 수 있다. 벨렘(Bellême)백의 부인 마빌(Mabille)의 살인 사건에 대한 혐의를 입은 기사 기욤(Guillaume)은 반역죄로 고소당하였는데 살해당한 마빌이 기욤에게서 페라이(Peray)성(城)을 빼앗는 바람에 이 둘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마빌은 이러한 기욤과 의 관계를 종종 언급하곤 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욤은 마빌의 죽음에 대한 의심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으며 마빌의 남편 로제(Roger)백과 자녀들은 기욤의 영지를 모두 몰수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기욤은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오르데릭 비탈이 살고 있는 성 에브뢰(Saint Evreux) 수도원으로 피신하여 수도승들의 보호아래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었다. 기욤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불행히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만한 증거나 증인을 찾을 수 없었다. 마침내, 기욤 정복왕(Guillaume le Conquérant)이 주재하는 법정에서 성직자의 참석과 함께 끔찍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써 ‘달구어진 쇠’를 이용한 시험을 시행하도록 결정하였다. 결국 기욤은 맨손으로 달구어진 쇠를 잡았으나 신의 가호 덕분에 기욤의 손은 화상을 입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이를 지켜보던 성직자들과 군중들은 몹시 놀라워하였으며 소리 높여 신을 찬양하였다.³¹⁾ 만약 기욤이 ‘달구어진 쇠’를 통한 시험을 통해 유죄로 판명되었다면 그 자리에 함께 하던 사악한 의도를 품은 무장한 기욤의 적들은 단숨에 기욤의 목을 쳐버렸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성 에브뢰 수도원의 수도승들은 기욤의 시험을 마치 전례의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경건하게 임하고 있으며 기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속 귀족들의 후원도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

31) *The ecclesiastical History of Orderic Vitalis*, ed., Majorie Chibnall(Oxford: Clarendon Press, 1969), t. 3, pp.160-162.

만 뜨거운 물을 이용한 996년-1005년 양제 대성당에서 시행된 일방신명재판³²⁾이나 1066년 성 모리스 대성당에서 이루어진 일방신명재판³³⁾의 경우 시험 시행 후 3일째 되는 날에서야 비로소 신의 판결이 드러나는 것과는 달리 위에서 살펴 본 노르망디에서 시행된 시뵐궈게 달구어진 쇠를 맨손으로 잡는 일방신명재판의 경우는 생사여부가 신속하게 결정되는 시험의 시행 장소에서 공포되었다. 신의 판결은 성직자와 군중들의 소리로 드러났으며 기욤의 친구인 수도승들은 그를 보호하기 위한 진정한 전투를 치렀다고 기술하고 있다. 물론 기욤의 상당한 물질 후원에 대한 보상으로 추측을 할 수 있겠지만 수도승들은 무엇보다도 기욤에게 안전한 피신처를 제공했으며 세속 귀족들이 기욤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신명재판을 제안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달구어진 쇠를 맨손으로 잡아야만 하는 육체적·심리적 두려움과 무장을 한 적들이 지켜보는 압박감으로 시험에 임해야만 하는 기욤과 이를 지켜보는 군중들보다는 3일이나 7일이라는 관습적인 절차에 따르고 있는 1066년 양제에서 이루어진 뜨거운 물을 이용한 일방신명재판에 참가한 이들에게 극적인 반전과 종교적 감동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충분했을 것이다.

2. 소뮈르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일방신명재판의 양상

11·12세기 소뮈르 주변의 수도원들은 신의 지혜와 의지로 복잡한 갈등과 시시비비를 풀어가겠다는 일방신명재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도 급속하게 팽창하는 봉건 세속 영주권과 전투력을 겸비한 기사들의 지치지 않는 호전성과 폭력성이라는 정치적·사회적 위협과 부담을 극복하고자

32) 『성 플로랑 수도원의 검은색 표지의 문서집』, fol. 99-r.

33) *Ibid.*, fol. 100.

하는 교회의 현실적인 선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빵과 치즈를 매개로 하는 시험에 관한 기록은 소뮈르와 루아르강 주변의 문서집들에서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앵글로 색슨 관습법에서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 영국으로부터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시행된 경우는 없는 듯하다.³⁴⁾ 그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차가운 물을 매개로 하는 일방신명재판의 기록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 반면에 뜨거운 물이나 달구어진 쇠를 매개로 하는 시험이 대부분을 차지한다.³⁵⁾ 이른바 뜨거운 물이나 달구어진 쇠로 인한 손의 화상은 이른바 정의와 진실을 판별하는 신의 의지와 개입의 표징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신의 의지와 정의가 시각화된 손의 화상은 거짓과 진실을, 죄의 유무를 판별해준다.³⁶⁾ 뜨거운 물을 이용한 일방신명재판에 관한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인 기술이 담겨 있는 『성 플로랑 수도원의 검은색 표지의 문서집』에 담긴 1066년 8월 2일에 작성된 문서를 살펴보자.³⁷⁾ 소뮈르의 성 플로랑 수도원과 앙주백(伯) 조프루아(Geoffroy le Barbu) 사이에 성 랑베르(Saint-Lambert-

34) 앵글로 색슨 관습법에서 'corsnaed'로 불리며 나타나고 있다.

35) 물, 불, 쇠와 빵 등 일방신명재판에 활용되는 매개물은 각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양하나 루아르강 주변에서는 뜨거운 물을 이용한 일방신명재판이 널리 행해지고 있다. 11세기 그들 부모의 기증을 반대하던 3명의 귀족들이 그들의 대표자에게 달구어진 쇠를 이용한 일방신명재판에 임하도록 하였던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 *Archives d'Anjou*, ed., P. Marchegay, t. III, (Anger, 1854), n°313.

36) 한 예로 996년-1005년경 주교 르노(Renaud)가 제안한 자신의 동생과 백을 상대로 한 일방신명재판을 들 수 있다. 시험의 전개과정이나 참석인원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은 없으나 시험 시행 3일 후 시험에 임한 농노의 손에 관한 기술을 강조하고 있다; *Cartulaire noir de la cathédrale d'Anger*, Chanoine Urseau(éd.) (Angers: Germain et Grassin, 1908), n° 25.

37) 필자는 신명재판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이 문서에 관한 분석을 시도했으나 일방신명재판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11 · 12세기 일방신명재판에 관련된 1차 사료가 상당히 제한적인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본고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정민, 같은 논문, p. 16.

des-Levées) 수도원과 성 마르탱(Saint Martin de la Place) 수도원의 교구에 속하는 발레(Vallée)에 위치한 숲과 개간지에 관한 소유권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였다.³⁸⁾ 한해 내내 양쪽은 서로 격렬하게 대립하였으며 양주백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전의 권리를 주장하며 수도승들의 증언을 비난하였다. 결국 양주백은 성 플로랑 수도원의 수도승들에게 결투를 신청하였다. 성 플로랑 수도원의 가신 알셰르(Alcher)는 고령의 조슬랭(Joscelin Crusuin)을 소환하였다. 비록 조슬랭의 원기와 시력은 극도로 쇠약하였으나 이 소송의 원인이 된 숲을 관리하는 사람의 아들이었으므로 이 사건의 진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양제에 있는 성 모리스(Saint Maurice) 대성당에서 뜨거운 물을 이용한 일방신명재판이 열리게 되었다. 시험 후 3일이 지난 뒤에 일방신명재판이 시행된 그 곳으로 다시 모여온 이들은 신의 영광 덕분에 조슬랭의 손이 무사함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이 과정을 지켜보던 모든 참석인은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의혹을 떨쳐 버렸다. 이후 지오프로와 양주백은 회개하였으며 그가 부당하게 징수했던 수확물을 돌려주었다. 이 기록물은 일방신명재판을 마치 참여자가 많은 공연처럼 묘사하고 있으며 적어도 성 플로랑 수도원의 수도승들은 자신들의 수도원장 시공(Sigon)의 슬픔과 눈물에 대한 모든 보상과 군중들의 지지에 기뻐하며 되돌아왔다고 증언한다. 곧이어 그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신에게 감사하며 커다란 자비를 베풀어준 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

뜨거운 물이나 달구어진 쇠를 이용한 일방신명재판에 관한 기술은 주로 일방신명재판이 제기되는 갈등 원인이나 소송 제기, 전개과정 그리고 시험 결과와 해석이 주를 이룬다. 위에 살펴 본 성 플로랑 수도원의 수도승들과 지오프로와 양주백 사이에 발생한 일방신명재판에서는

38) 『성 플로랑 수도원의 검은색 표지의 문서집』, fol. 99-r와 fol. 100.

뜨거운 물을 이용한 시험에 임하는 조슬랭이라는 인물에 관한 비교적 상세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시험에 임하는 자들은 성직자들이나 수도승들이 아닌 그들을 대신하는 제3의 인물이 거의 대부분이며 이들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정보는 그다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때로는 일방신명재판에 뜨거운 물이 사용되는지 혹은 달구어진 쇠가 사용되는지에 관한 설명조차 언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뜨겁다’ 혹은 ‘펼 펼 끓는’, ‘달구어진’ 등의 표현은 관습적·주관적인 경험에서 출발하며 온도를 감지하는 개인차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게다가 뜨거운 물이나 달구어진 쇠를 매개로 하는 일방신명재판은 단 하루 만에 결말이 나는 것이 아니라 4일 혹은 7일 정도에 걸쳐 진행된다는 전략적 이점을 가지게 된다. 즉 일방신명재판에 임하는 자는 목요일에 치러질 시험을 준비하면서 교회에서 처음 3일을 보낸다. 그리고 손을 뜨거운 물에 담근 후 3일이 지난 일요일에 다시 교회로 모인다. 목요일에서 일요일로 이어지는 시간의 이동은 성목요일에서 부활로 이어지는 그리스도교적 반전의 감동과 신성한 놀라움이 재판관을 지켜보던 참가자들과 군중들에게 기다리고 있으며 수도승들은 적극적인 선전운동을 재개할 수 있다. 성 플로랑 수도원의 수도승들과 앙주백 조프루아 사이에 발생한 뜨거운 물을 이용한 일방신명재판에서 조슬랭의 화상을 입은 손의 무사함으로 앙주백의 주장이 거짓임으로 판명되자 기록자는 신의 개입과 영광으로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것은 재판 결과에 대한 새로운 분쟁이나 이의제기에 대한 가능성을 미리 제거하려는 수도승들의 전략적인 대처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앙주백 조프루아는 왜 성 플로랑 수도원의 수도승들을 일방신명재판으로 몰아넣은 것일까? 먼저 그는 수도승들이 도전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을 수도 있고 그의 부하들

이 이 상황에 유능하게 대처하여 물을 최대한 펄펄 끓도록 불을 지필 것이라고 미리 짐작했을 수도 있다.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기록자는 양주백 조프루아의 사람들이 신의 재판에서 너무 인간적인 계산에 치중하고 있다고 나무라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 플로랑 수도원의 수도승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양주백 조프루아를 지지하는 사람들보다 일방신명재판의 객관성과 타월성을 믿었을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양주백과 성 플로랑 수도원의 수도승들과의 싸움은 치열했으며 긴 시간동안 이어졌으며 격앙에 가까울 만큼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정확한 설명이나 정보는 없지만 소송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시험에 사용될 냄비를 준비하고 시험이 시행되고 시시비비를 가려내는 공개적인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 예상컨대, 성 플로랑 수도원의 입장을 지지하고 지오프로와 양주백을 반대하는 무리들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일방신명재판의 결과를 지켜보던 이들의 지지와 환호에 수도승들이 기뻐했다는 사실은 재판을 지켜보던 이들과 수도승들은 최소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소송은 한해 내내 팽팽히 대립하여 급기야 양주백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수도승들의 증언을 비난하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양주백은 성 플로랑 수도원의 수도승들에게 결투를 신청하게 되는 지경에 이를 만큼 이 소송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심과 의혹을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는 중압감이 양주백이나 성 플로랑 수도승들에게도 크게 부가되었을 것이다. 결국 성 플로랑 수도원의 수도승들에게는 이 치열한 소송에서 반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뜨거운 물을 이용한 일방신명재판을 선택하였다. 그러므로 성 플로랑 수도승들은 자신들의 소유권을 지켜내고 재판을 지켜보는 대중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일방신명재판을 통한 극적 반전과 감동을 연출해야만

한다. 이처럼 11·12세기 소뮈르와 그 주변 수도원들에서 뜨거운 물이나 달구어진 쇠를 이용한 일방신명재판을 수용하는 전략적인 목적은 전투력을 겸비한 세속 영주들이나 기사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권리나 소유물을 지켜내고자 하는 현실적인 자구책으로 설명될 수 있다.³⁹⁾

11·12세기 소뮈르와 그 주변 수도원들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일방신명재판에 관한 기술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즉 소송 제기의 원인이나 동기는 ‘사악한 충고에 의하여’ 혹은 ‘나쁜 영에 이끌려 의해’ 등으로 기존의 권리와 소유권에 대한 부정으로 출현한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일방신명재판의 절차 역시 전례의식과 다를 바 없는 경건하고 종교적인 분위기로 이어진다. 신의 개입과 의지가 도래하기를 대중들은 숨을 죽이며 지켜본다. 시험 후 3일이 지나고 신의 영광과 정의가 눈앞에 드러날 극적 반전과 감동을 기다리며 대중들은 모여들기 시작한다. 이처럼 뜨거운 물이나 달구어진 쇠를 매개로 하는 일방신명재판을 다루는 기술은 일관적이며 그리스도교적이다. 피에르 앙드레 시갈(Pierre Andre Sigal)의 ‘성인들은 뿔뿔히 눈을 되돌려주는 일에 익숙하지가 않다’라는 표현처럼 11·12 세기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지는 않는다.⁴⁰⁾ 그

39) 11세기 후반 위제브(Eusèbe) 주교 주도하에 성 니콜라(Saint Nicolas) 수도원의 수도사들과 성 모리유(Saint Maurille)의 참사원들 사이에 일어난 소송과 1080년 경 아니에르(Asnières)의 생산물 지대 때문에 발생한 성 니콜라 수도원과 두에(Doué)의 백작 사이의 소송에서도 뜨거운 물을 이용한 일방신명재판이 자연스럽게 선택되고 있다: P. Marchegay, *Chroniques des comtes d'Anjou*(Paris: J. Renouard, 1856), tome I, pp. 474-476. 이와는 달리 루아르강 주변에 위치한 폰트브로(Fontevraud) 수녀원의 설립자인 로베르 다르브리셀(Robert d'Arbrissel)을 비롯한 일부 신학자들은 신명재판을 ‘신을 시험하는 행위’로서 비판하고 있다. 로베르 다르브리셀은 특히 쌍방신명재판과 ‘불을 이용한 일방신명재판’에 부정적인 견해를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Dominique Barthélemy, “Le renoncement aux ordalies”, ed., Jacques DALARUN, *Robert d'Arbrissel et la vie religieuse dans l'ouest de la France, Actes du colloque de Fontevraud 13-16 décembre 2001*(Turnhout: Brepols, 2004), p. 173.

들에게는 병세의 완화,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기, 반대로 교회에 적대적이거나 신성모독자인 경우 불행의 엄습 등이 일상적인 기적을 만들어내는 주된 재료이다. 이러한 기록물들은 대수도원이나 큰 교회와의 소송에서 농노들이나 힘없는 이들의 실패, 오해와 고통 등을 이야기 하면서 교회 영주들이 신명재판과 신의 복수에 대하여 얼마나 최선을 다해 임하는가를 들려주고자 한다. 하지만 일방신명재판의 소송에 관한 기록들을 통하여 소송에 관한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시험을 통해 드러나는 기적이 그렇게도 명백하다면, 그 기적이 모두에게 상당히 우호적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왜 3일이라는 기다림이 필요했을까? 신이 정말로 거짓맹세를 이미 알고 있었다면 왜 뜨거운 물이 남긴 냄비의 등장까지 필요했을까? 11·12 세기 소뮈르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수용되는 일방신명재판에 관한 기록들은 신의 능력과 지혜를 시험하는 불경스러운 시도가 아닌 신은 늘 정의로운 자의 손을 들어준다는 그리스도교적 믿음을 전제로 해결하기 어려운 범죄와 봉건적 반목과 갈등을 공동체의 합의와 화해로 함께 풀어나가고자 하는 봉건적·사법적 관습장치의 기능과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맺음말

인간의 능력과 지혜만으로는 정당한 권리와 진실을 분별할 수 없으므로 언제나 정의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신만이 옳은 자의 손을 들어 줄 것이라는 그리스도교적 믿음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40) Pierre André Sigal, *L'homme et le miracle dans la France médiévale(XIe-XIIe siècle)*, (Paris:Le Cerf, 1985), p. 255.

신명재판은 부족한 성문법 체계와 빈약한 객관적 증거물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봉건적·사법적 관습장치였다. 결투라는 무력적인 해결방법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내는 쌍방신명재판과는 달리 일방신명재판은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혐의와 오해를 벗을 수 있도록 신체적 혹은 물리적 시험이나 시련에 임하는 일종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성문법 체계의 미완성이나 객관적 증거의 부족은 재판소송의 진행과 결과 해석에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으며 특히 재판의 참가자들과 그 재판과정을 지켜보던 대중들의 오해와 의혹을 말끔히 제거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P. 브라운이 표현하는 바와 같이 성스러움이라는 종교적 경외감을 바탕으로 하는 신명재판을 통하여 첨예한 갈등과 모순을 해결하는 사회, 또한 심리드라마와 같은 열정적이고 감동적인 재판이 그 기능을 담당하는 사회라고도 설명될 수 있다. 일방신명재판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시뻘겋게 달걀 껍질과 빵과 치즈,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 등 다양한 매개물을 이용한 시험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11·12세기 소뮌르와 그 주변 수도원에서는 ‘불’을 이용한, 즉 뜨거운 물이나 달구어진 쇠를 이용한 시험을 주로 시행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빵과 치즈 등 음식물을 매개로 하는 시험이나 차가운 물을 이용한 시험의 경우 그 결과가 즉각적인 동시에 생명에 상당히 위협적이다. 그러나 뜨거운 물이나 달구어진 쇠를 이용한 시험은 신의 정의가 시각화된 표징이라고 할 수 있는 화상의 흔적을 기다리는 3일 동안 대중적 심리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또한 화상을 치유할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시험 시행 후 3일 동안 시험에 임한 자를 가두거나 격리시키는 조치는 물론이거니와 그의 가족들이나 주변인들의 행적이나 활동에 관한 상세한 정보나 기술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3일이라는 시간은 시험에 임한 자에게는

대중들에게 화상의 흔적을 통한 극적 반전과 감동을 연출할 수 있는 가능성과 대중들에게는 마치 예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부활로 이어지는 것과 같은 기다림으로 간주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일방신명재판을 신을 시험하는 불경스러운 행위로 정의하는 교회 내부의 날카로운 비판과 일방신명재판의 의식 절차상의 문제나 적용의 합법성에 관한 문제점 등에 관한 부정적인 견해는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며 1215년을 전후하여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일방신명재판은 스스로 자신의 결백이나 권리를 공개적으로 소명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신체의 상처·부상·죽음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성은 내포하고 있으나 신체적 혹은 물리적 시험을 통한 ‘신의 뜻이 담긴 시각적 증거물’을 제시함으로써 재판을 지켜보던 대중을 납득시킬 수 있는 사법적 기능과 효과를 지닌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나 고소인이나 혹은 재판 과정을 지켜보던 군중들 모두가 신은 반드시 진리와 정의를 밝혀 줄 것이라는 믿음에 한 치의 의심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미사를 포함한 의식절차를 갖춘 일방신명재판의 진행은 실로 막대한 결과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11·12세기 소뮈르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성직자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비전투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선호되고 있는 일방신명재판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복수·갈등·소송 등을 해결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봉건적·사법적 관습장치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시에 신의 정의와 개입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전제로 신체적·정신적·심리적 고통을 인내하는 자와 그 과정을 지켜보던 긴장감과 의혹을 지닌 대중들에게는 신에 대한 경외감과 찬미로 뒤바뀌게 되는 종교적 열정과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주제어 : 『성 플로랑 수도원의 검은색 표지의 문서집』, 일방신명재판, 쌍방신명재판, 시험, 고백

(논문투고 : 2012.5.29/ 논문심사완료 : 2012.6.18/ 논문게재 확정일 : 2012.6.21)

참고문헌

- 『성 플로랑 수도원의 검은색 표지의 문서집(*Codex vetustarum donationum niger nuncupatus*)』, ed., P. Marchegay, *Archives d'Anjou*(Angers:1844), tome I.
- 이정민, 「11·12세기 소뮈르와 그 주변 지역의 신명재판(l'ordalie)에 관한 고찰」, 『프랑스사연구』, 제21집(2009,8).
- MGH, Merowingici et Karolini Aevi*, ed., Karl Zeumer(Hanovre: 1882), *Sectio V, Formulae*, I.
- Cartulaire noir de la cathédrale d'Anger*, ed., Chanoine Urseau(Angers: Germain et Grassin, 1908), n° 25.
- Ademari Cabanensis Chronicon*, ed., Pascale Bourgain, Richard Landes, Georges Pon(Turnhout: Brepols, 1999), *Corpus Christianorum. Continuatio Mediaevalis CXXIX*, III.
- Archives d'Anjou*, ed., P. Marchegay, (Anger, 1854), t. III., n°313.
- D. Barthélemy, “Les ordalies de l’an mil”, *La justice en l’an mil, Collection Histoire de la Justice*, 15(Paris:2003).
- _____, “Présence de l’aveu dans le déroulement des ordalies(IXe-XIIIe siècle)”, *Collection de l’Ecole Française de Rome*, 88(Rome:1986).
- _____, “Le renoncement aux ordalies”, ed., Jacques DALARUN, *Robert d’Arbrissel et la vie religieuse dans l’ouest de la France, Actes du colloque de Fontevraud 13-16 décembre 2001*(Turnhout: Brepols, 2004).

- Robert Bartlett, *Trial by Fire and Water. The Medieval Judicial Ordeal*(Oxford;Clarendon Press,1986).
- Bernard de Clairvaux, *Sermo 66, Cantica Canticarum, PL 183, col. 1100.*
- P. Browe, *De ordaliis*, tome 1, Rome, 1932, n°14(*Pontificalis Universitas Gregoriana. Textus et documenta. Series theologica. 4*).
- P. Brown, *La société et le sacré dans l'Antiquité tardive*(Paris;Le Seuil, 1985).
- J. Gaudemet, *Les ordalies au Moyen Age: doctrine, législation et pratique canonique, Recueils de la Société Jean Bodin, XVII. La preuve, 2*(Bruxelles, 1965).
- Guibert de Nogent, *Autobiographie*, ed., E. R. Labande(Paris, 1981).
- Hermann de Tournai, *De miraculisbeatae laudunensis*, PL 156, col. 1011-1014.
- Hincmar de Reims au IX siècle: *De divortio Lotharii, Patrologie Latine 125, col. 660.*
- J. F. Lemarignier, *Histoire des institutions française au Moyen Age*, III,(Paris, 1967).
- P. Marchegay, *Chroniques des comtes d'Anjou*(Paris: J. Renouard, 1856), tome I.
- Jane Martindale, *Status, Authority and Regional Power. Aquitaine and France 9th to 12th centuries*(Aldershot(GB);Variorum, 1997).
- Pierre André Sigal, *L'homme et le miracle dans la France*

médiévale(XIe-XIIe siècle), (Paris:Le Cerf, 1985).

The ecclesiastical History of Orderic Vitalis, ed., Majorie Chibnall(Oxford:Clarendon Press, 1969), t. 3.

Stephen White, “Pactum legem vincit et amor judicium. The settlement of disputes, Compromise in 11th century France”, *The American Journal of Legal History*, 22(1978).

_____, “Proposing the Ordeal and avoiding it. Strategy and Power in western French Litigation, 1050–1110,” *Culture of Power. Lordship, Status and Process in Twelfth-century Europe*, ed., T. Bisson(Philadelphie;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5).

Reflection on the unilateral ordeal around Saumur in the XIth and the XIIth centuries

Lee, Jeong-min

For the purpose of finding out the aspects of the unilateral ordeal, under the belief of the omnipotence of God and the divine intervention, as a kind of feudal judgement around Saumur in the XIth and the XIIth centuries. It is indispensable for us to examine the historical remarks and the narrative testimonies according to the title of the *Codex vetustarum donationum niger nuncupatus*, etc. It is said to the unilateral ordeal, what we called, to find the innocent or not be, to claim the right and to testify the truth through the trial by the boiling or cold water, the red hot iron, the bread and cheese, etc.

To accomplish this task, in first, we examine the origin of unilateral ordeal which is rooted in the Carolingian with the legal procedure. Secondly, we see to the unilateral ordeal that takes the feudal and judicial role of cutting the Gordian knot and the religious and psychological task at the same time. Finally, according this cartulary of the *Codex vetustarum donationum niger nuncupatus*, we look into the unilateral ordeals which are

represented around Saumur in this period. In spite of the ecclesiastical criticism for temptation of God, it shows that the unilateral ordeal is very accepted by the people, who can't assert their right or prove their innocence in public, without arms including the clergy around Saumur. Bearing the belief of the justice of God and the divine intervention, the unilateral ordeal seems to reflect not only the mentality of the Christianity but also the feudal simultaneously the judicial custom in settling the feud around Saumur in the XIth and the XIIth centuries.

Key Words : 『Le Livre Noir de Saint Florent de Saumur』,
unilateral ordeal, bilateral ordeal, trial, confession